과급기 운전시험 요건 삭제

■ 주요 개정 사항 요약

관련 규칙/지침

시행 일정

규칙 5 편 2 장 211.의 2 항 (2)호 (2)호 (1) 및 (아) 및 (아)

■ 주요 개정 사항

○ 개정 사유

과급기 완성품은 최고사용회전수 및 작동온도에서 20분간 운전시험을 하여야 하며 엔진에 장비하여 110% 과부하시험을 하는 경우 이 운전시험을 대체할 수 있음. 따라서 대부분 과급기 완성품의 운전시험은 엔진에 장비하여 시험되어 왔 음. 그러나 IACS UR M73이 제정되면서 주기관의 경우 110% 과부하 시험이 과 급기와 엔진의 첫 조합에만 실시됨에 따라 과부하 시험이 실시되지 않는 시리 즈 과급기의 경우 운전시험을 과급기 제조사에서 시험설비를 추가하여 실시해 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함.

○ 개정 사항

과급기는 기관성능을 향상시키고자 사용되는 기관부품으로 기관성능이 시운전 에서 만족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과급기 또한 기관특성에 부합하므로 과급기에 대한 별도의 특성(운전)시험이 불요하다고 판단됨. 과급기의 형식시험 시 1시간 의 운전시험이 실시됨. 상기 이유로 과급기 단품의 운전시험 요건을 삭제함.

○ 영향 분석

- ✔ 안전, 보안 또는 환경보호에 미치는 영향 및/또는 기여
 - : N.A
- ✓ 순치수 또는 총치수에 미치는 영향
 - : N.A